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2. 7. 9

제안자 :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김재근위원외 2명)

1. 수정 이유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통례인 바 본 조례에서는 상위법의 규정이 애매하여 규정으로 정하여 업무분장 사항을 위임하고자 하려는바 규정으로 위임하기 보다는 상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정비된 이후에 개정하여도 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수정 주요 골자

제6조를 전체 삭제함.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이하 "의사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사무
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의사국은 교육위원회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교육위원
회의 회의와 운영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조직) ① 의사국에 의사국장을 두며,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의사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 한다.

③ 의사국에 의사과를 두며, 의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교육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국장 밑에 의안담당관 1인
을 두되 의안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의안연구관은 5급상당 별
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사무직원의 정수) 의사국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하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교육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제6조는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 정 안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p><u>체 6조(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u> <u>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위원</u> <u>회 규정으로 정한다.</u></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